

협회업무활동

▣ 공정거래 교육

▶ 제조 및 유통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 개 요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경품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등 주요내용
- 일 시 : 10월 22(수) 14:00~17:00
- 장 소 :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 참석자 : 제조 및 유통관련업체 임직원 100여명
- 강 사 :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송정원 사무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서남교 사무관  
(경품류제공등에관한고시 등 주요내용)

▶ 특수거래분야 공정거래교육 실시

- 개 요 : 방문판매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 일 시 : 10월 17일(금) 14:00~17:00
- 장 소 :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 관련업체 임직원 90여명
-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홍대원 서기관

▶ 전자상거래분야 공정거래교육 실시

- 개 요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업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 일 시 : 10월 15일(수) 14:00~17:00
- 장 소 :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업체 임직원 121명
- 강 사 :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김성만 과장  
(전자상거래제도의 주요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 전자상거래에 있어

거래안전성 담보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권철현 사무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스팸사이트 구축과 소비자보호 / 전자상거래의 표준약관제도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효율적 운용방안)

### ▣ 공정거래 해외연수 실시

- ▶ 연수목적 :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선진 경쟁당국의 경쟁법 적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 제고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실시
- ▶ 연수국가 : 호주, 뉴질랜드
- ▶ 방문예정기관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CP전문가협회, AEEMA 등
- ▶ 연수기간 : 2003. 10. 23(목) ~ 11. 1(토) 9박 10일
- ▶ 참가대상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 등 21명

###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업무현황

- ▶ 업무활동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 이첩사건과 협의회 직접 접수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조정
- ▶ 조정효력 : 하도급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
- ▶ 사건처리현황(2003. 1. 1. ~ 10. 21)

구분	계	조정불성립	신고취하	불개시
제조	32	5	24	3
건설	40	8	28	4
계	72	13	52	7

#### ▶ 제23차 분쟁조정회의 개최 예정

- 일시 : 10월 31일(금) 11:00
- 장소 : 공정거래협회내 분쟁조정회의실
- 안건 : 조정불성립 4건, 신고취하 10건 등 총 14건

## 제5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기업체 및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담당 실무책임자 5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연세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과 관련법규 해설 및 사례중심의 토의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기 공정거래 전문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전문연수과정에서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제력집중억제 ▲CP의 운용 및 효과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 ▲전자상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보호 ▲불공정약관의 규제 ▲경쟁법의 국제적 적용과 국제협력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과 해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협회는 그동안의 연수과정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건의한 사례중심적 강의 진행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여, 급변 전문연수과정에서는 강의 내용에 실무사례 중심의 발표 및 자유토론시간을 확대하고 교재를 사례중심적 설명위주로 전면개편하였다.

## 전자상거래분야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관련업체 임직원 1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수)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상거래분야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김성만 과장은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안전성의 담보방안, 사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 소비자



의 권익보호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같은 과의 권철현 사무관은 전자상거래의 표준약관제도에 대하여,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약관을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고를 절약하고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마크가 표시된 「표준약관 마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팸규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발표에서 스팸메일은 1일 평균 개인별 수신건수 39.4통, 하루 평균 7.7억통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 3개월마다 노스팸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정리하여 통신판매 미신고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3자에 의한 매매계약이행보장장치(Escrow system)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대금지급의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설명에서는 “기업이 CP를 도입함으로써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CP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7대 핵심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고 CP의 실질적 작동여부, 감경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다.

## 특수거래분야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방문판매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특수거래분야 관련업체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7일(금)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특수거래분야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 홍대원 서기관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시행령, 방문판매·다단계판매구분고시(안) 및 방문판매등에있어서소비자보호지침(안)의 주요내용과 특수판매사업자 자율준수편람의 운용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운용부서가 산자부에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공정위로 변경됨에 따라 법집행 체계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로,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제·개정되었으며, 또한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구법상 무조건적 청약철회 기간이 방문판매 10일, 다단계판매 20일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방문·다단계판매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은 14일로 통일되고, 통신판매는 7일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가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거래를 일반판매와 구별하여 규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판매·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보통인 반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는 등 상대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 일반판매와 구별하여 규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제조 및 유통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한국공정거래협회는 제조 및 유통관련업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2일(수) 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조 및 유통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송정원 사무관은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기업 스스로 규범을 지키며 범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유통거래과 서남교 사무관은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대규모소매점교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경품부 상품의 종류 및 유형 등을 설명하면서 업체가 경품한도 등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해 주의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경품으로서, 예를 들면 백화점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에게 응모권을 주어 추첨 등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범위반이 아니나 실제로 백화점 방문자의 대다수가 상품을 구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신제품 발표시 경품의 한도를 벗어나는 경품행사에 대해, 예를 들면 제과회사에서 새로운 과자류 등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창업이나 신규사업 진출시의 소비자현상 경품과는 다르므로 동 경품행사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범위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